

「고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와 「고흥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1년 12월 22일

고 흥 군 의 회 의 장



고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개정사유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('22. 1. 13. 시행)으로 위임조례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고흥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,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(안 제1조)
 - 목적조문: 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 → 제40조
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3조 → 36조로
 - 여비조문: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3조제1항제2호 → 제36조제2항으로
- 공무원 소속 변경(안 제2조2항, 제3조제3항, 제10조)

[붙임 1]

고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·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·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(이하 “의회””를 “의원(이하 “군의원”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지방공무원”을 “고흥군의회(이하“군의회”라 한다.) 소속공무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군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군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의회 의원(이하“의원”이라 한다)”을 “군의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월정수당은 군의회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(여비지급)”을 “(여비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의원”을 “군의원”으로, “따라 공무로 출장하는”을 “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”으로 한다.

제4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여행 일수는 공무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로 한다. 다만,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요되는 일수는 이에 포함한다.

③ 제1항의 여비는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6조제2항 별표 6 및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을 적용하여 지급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의원”을 “**군의원**”으로 한다.

제7조 및 제9조,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삭제한다.

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0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**군의회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.**

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고흥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의정활동비지급) ① 고흥군의회 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의정자료수집,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존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.</p>	<p>제2조(의정활동비지급) ①----- ---- <u>의원(이하 “군의원”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② 의정활동비는 <u>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</u>에 지급한다.</p>	<p>②----- <u>고흥군의회(이하 “군의회”라 한다.) 소속공무원</u>----- -----.</p>
<p><신 설></p>	<p>③ <u>군의회가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군의회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</u></p>

제3조(월정수당지급) ①의회 의원
(이하“의원”이라 한다)으로 재
직하는 동안 매월 월정수당을
지급한다.

② (생략)

③월정수당의 지급시기는 지방
공무원 보수지급일로 한다.

제4조(여비지급) 의원이 본회의
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
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는 때
에는 여비를 지급한다.

<신설>

<신설>

제5조(여비의 종류) ①의원이 국
내출장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
여비는 운임(철도운임·선박운

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
한다.

제3조(월정수당지급) ①군의원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월정수당은 군의회 소속공무
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.

제4조(여비) ① 군의원-----

---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-
-----.

② 여행 일수는 공무여행을 위
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로 한
다. 다만, 공무의 형편상 또는
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
유로 인하여 소요되는 일수는
이에 포함한다.

③ 제1항의 여비는 「지방자치
법 시행령」 제36조제2항 별표
6 및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을
적용하여 지급한다.

제5조(여비의 종류) ①군의원---

임·항공운임·자동차운임), 일비, 숙박비, 식비로 구분한다.

② (생략)

제7조(여비지급기준) ①국내여비는 별표 2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.

②국외여비는 별표 3의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.

제9조(의정활동비 지급 제한)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.

제10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「고흥군 여비 조례」를 따른다.(개정 1996.3.9. 번호이동 2017.2.13. 개정 2019.10.2.)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<삭 제>

제10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군의회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.

[붙임 3]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: 고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 (서명 또는 날인)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자치법규안 내용	찬 성 여 부		의 견	비 고
	찬성	반대		